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46762
Republic of Korea

Phone :+82-70-8799-8332
 +82-70-8799-8326
Fax :+82-70-8799-8319
E-mail : wskwon@krs.co.kr
Person in charge :
KWON Wooseok

No : 2025-IMO-06
Date : 31 March 2025

제목 : SEEMP Part III 검증 및 Company Audit 절차 안내서(Rev.1)

[이 기술정보는 기존 발행된 기술정보 2023-IMO-09를 대체합니다.](#)

1. SEEMP Part III 일반사항

1) SEEMP Part III 개발

- MARPOL 부속서 VI 제26.3규칙을 적용 받는 선박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SEEMP Part III를 개발하여야 하며, 주관청 또는 인정기관의 승인 후 발행되는 적합확인서(Confirmation of Compliance, CoC)와 함께 본선에 비치해야 합니다.
 - A. 연간 CII 달성값(Attained CII)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론
 - B. 연간 CII 달성값(Attained CII)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설명
 - C. 향후 3년에 대한 연간 CII 허용값(Required CII)
 - D. 향후 3년 동안 연간 CII 허용값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문서화한 이행 계획
 - E. 자기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절차
 - F. 3년 연속 D 또는 단일 연도 E등급의 선박의 경우, 연간 CII 허용값(Required CII)를 달성하기 위한 시정 조치 계획 포함
- 2023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은 인도 시 MARPOL Annex VI의 제26.3.1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인도된 경우, 다음 해는 3개년 이행 계획의 첫 해가 되며, MARPOL Annex VI의 제28.6규칙에 따라 나머지 인도 연도 동안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시정 조치 계획 개발의 의무는 없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선박의 회사를 변경하거나, 기국의 변경, 그리고 회사의 변경과 기국의 변경이 모두 진행되는 경우, 새로운 SEEMP III를 개발하고 주관청 또는 인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가 다음 3년의 이행계획서에 따른 첫 번째 이행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향후 3년간의 CII 허용값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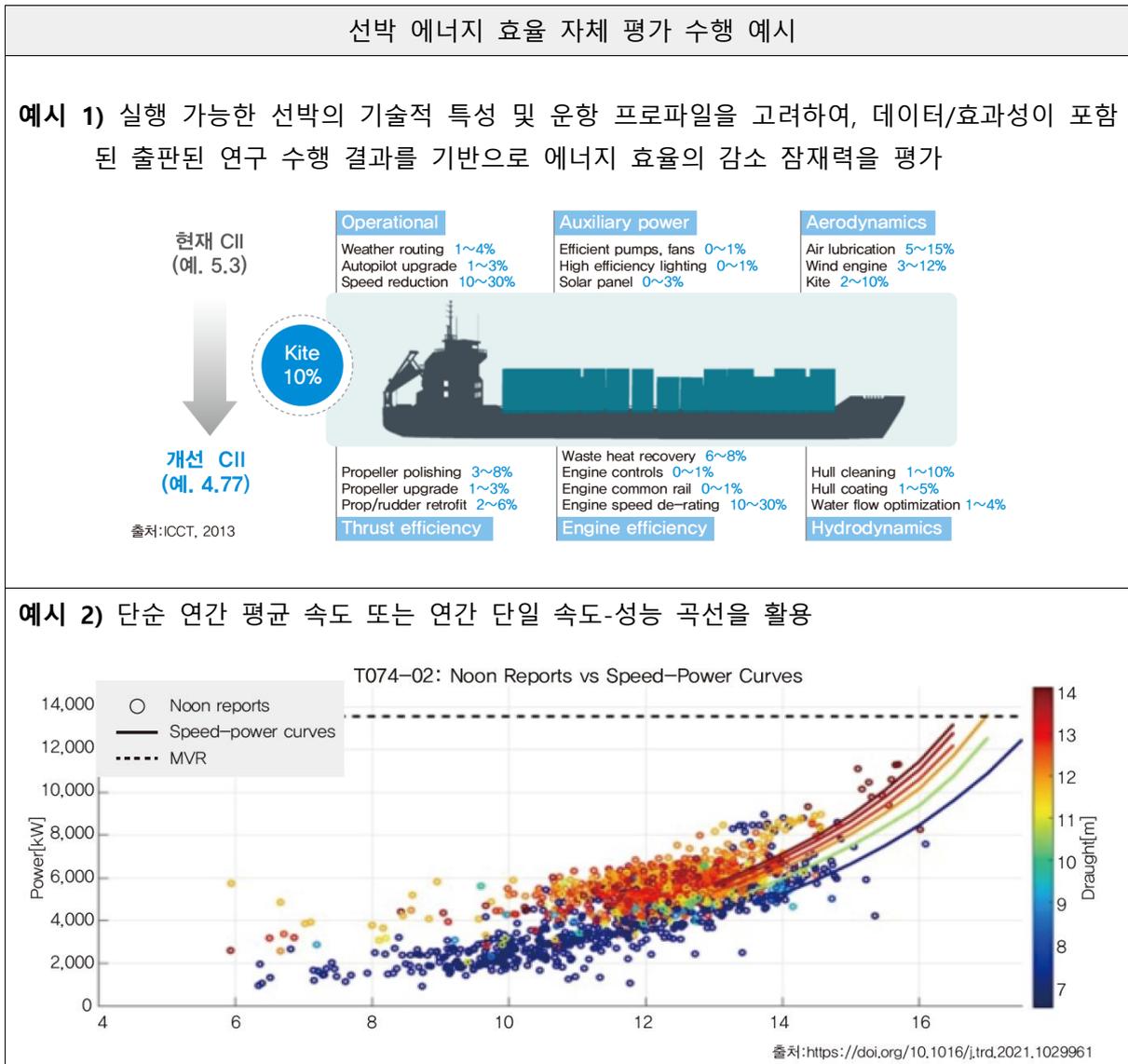
포함하기 위해 SEEMP PART III는 YYYY(이행계획의 첫 해), YYYY+1 및 YYYY+2의 3년 단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선박의 회사 변경 또는 주관청 및 회사의 동시 변경 이외에, SEEMP III의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3년이 유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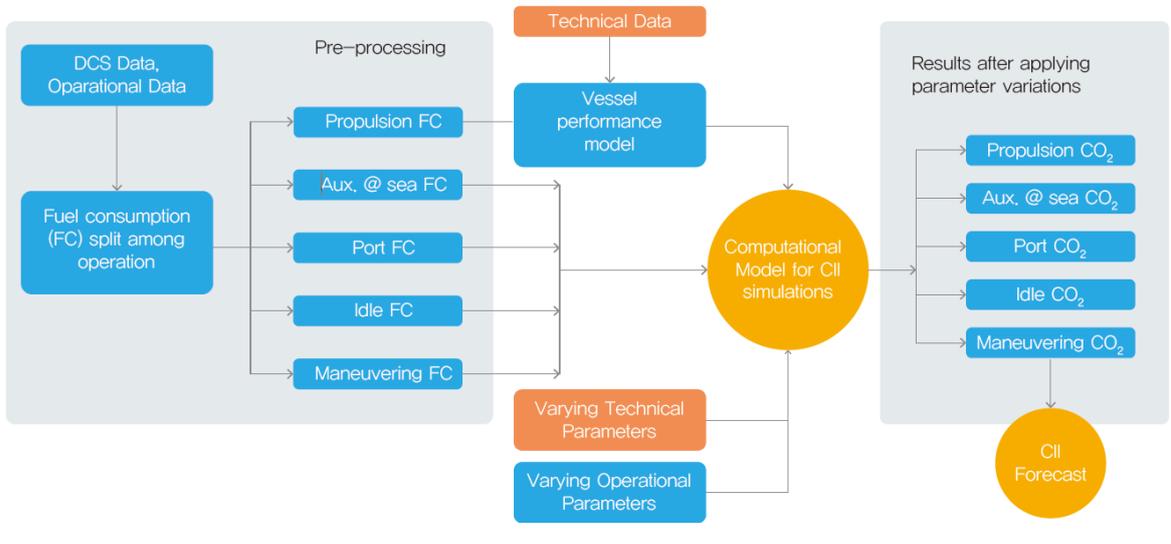
2) SEEMP Part III 이행(선사의 측면)

(1) 자체평가 및 개선

- 탄소집약도 규제에 따른 자체 평가 시에는 '연간 CII 허용값(Required CII) 달성을 위한 이행 계획'에 설명된 조치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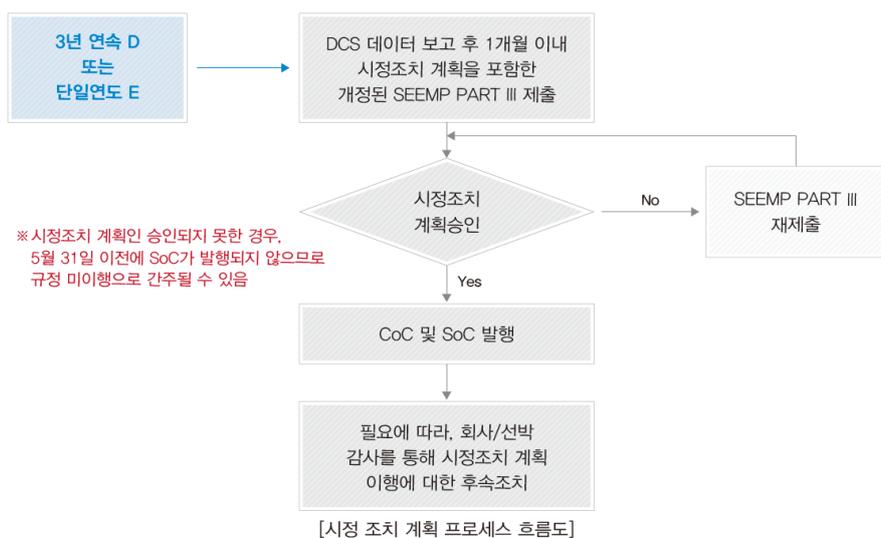


예시 3) 선박 성능 모델에서 운항 데이터, 흘수, 속도, 날씨(AIS 및 과거 해상 데이터)를 선박의 기술적인 인자와 결합하여 평가



(2) 시정조치 계획

- 역년 'YYYY'(예:2023년)에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3년 연속 D등급 또는 단일연도 E등급을 받은 경우, 개정된 SEEMP Part III는 시정 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YYYY+1'(예:2024년)에 검증되어야 하며, 'YYYY+2'(예:2025)에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연간 CII 허용값을 달성하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 3년 기간 중 마지막 연도(예:2025년)에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향후 3년 동안(예:2026년~2028년)의 시정조치 계획이 SEEMP Part III에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 또는 수정된 조치는 3년 이행계획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2. SEEMP Part III 검증 및 심사

MARPOL 부속서 VI 규칙 제26.3.3에 따른 SEEMP Part III의 검증 및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1) 최초 검증(Initial verification, MARPOL 부속서 VI 제5.4.6규칙)

- MARPOL 부속서 VI 제26.3규칙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SEEMP Part III를 개발하고 주관청 또는 RO의 검증 후 적합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요 검증 요소	제출 서류
a) G1 및 G5 가이드라인에 따른 CII 달성값 계산 방법의 정합성 b) G2 ~ G3 가이드라인에 따른 CII 허용값 계산 방법의 정합성 c) 주관청에 선박 데이터를 보고하는 방법 (SEEMP PART II에 해당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d) 3년 이행 계획의 MEPC.346(78) 부록 2bis 형식 준수 여부 e) CII 달성 목표에 기반한 3년 이행 계획의 조치 또는 조치 조합에 대한 효과 평가 f) 자체 평가 계획 수립, 실행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교정 조치 파악 여부 g) 책임자에게 적절한 교육 제공, 데이터 수집-통신-저장 시스템 구현, 3년 이행 계획과 관련한 육상 및 선내 업무에 대한 회사 내부 문서/절차/감사 시스템 변경 여부 등	- SEEMP Part III 및 검증기관이 요청한 관련 문서 - 승인된 SEEMP Part II

(2) 정기 검증(Periodical verification, MARPOL 부속서 VI 제5.4.6규칙)

- 기존의 개발한 SEEMP Part III에서 MARPOL 부속서 VI 규칙 제26.3.1의 요소가 하나라도 변경되는 경우와 최초 검증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주관청 또는 RO의 검증 후 적합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최초 개발한 SEEMP Part III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없는 경우, 2023년 1월 1일까지 최초 검증(2023년~2025년 이행계획 포함)을 받은 SEEMP Part III(2023년~2025년 이행계획 포함)는 2026년 1월 1일까지 첫 정기 검증(2026년~2028년 이행계획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검증 요소	제출 서류
기국 변경	

<p>(a) 양도받은 연도가 3년 이행 계획의 첫번째 해가 됨 (예, 변경 연도 : 2024년, 3년 이행 계획 대상 연도 : 2024년~2026년)</p> <p>b) 주관청 확인</p> <p>c)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 CII 달성값 및 CII 등급</p> <p>d) 최초 검증의 검증 요소 a), c) ~ 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보유한 Document of Compliance (DOC) -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SMC) certificate
회사 변경	
<p>a) 양도받은 연도가 3년 이행 계획의 첫번째 해가 됨 (예, 변경 연도 : 2024년, 3년 이행 계획 대상 연도 : 2024년~2026년)</p> <p>b) 인수한 회사 확인 이전 회사로부터 검증된 데이터 및 증빙 문서 포함 획득 여부</p> <p>c)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 CII 달성값 및 CII 등급</p> <p>d) 최초 검증의 검증 요소 a), c) ~ 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rtificate of Classification - 이전에 검증받은 SEEMP PART III와 CoC - 이전 회사로부터 받은 검증된 일부 데이터 관련 문서
자체 평가 및 개선, CII 계산 방법론 변경에 따른 이행 계획 조치 추가 또는 삭제	
<p>a) 최초 검증의 검증 요소 a), e) ~ 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EMP PART III 개정본 - 이행 계획 변경을 초래한 자체 평가 및 결정 관련 기록물 - 필요한 경우, SEEMP PART II 연료유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방법론
주요 개조 (치수, Capacity, 엔진 출력, 선종 변경)	
<p>a) 선박의 개조 요소 검증</p> <p>b) 최초 검증 후 주요 개조 일자</p> <p>c) CII 달성값 계산 방법 검증(개조 전후 비교)</p> <p>d) 최초 검증의 검증 요소 b), e) ~ 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EMP PART III 및 검증기관이 요청한 관련 문서 - 승인된 SEEMP PART II
최초 검증 후, 3년주기의 정기 검증	
<p>a) 최초 검증의 검증 요소 a) ~ g)</p> <p>b) 지난 3년간 CII 허용값 보장 전/후 CII 달성값, CII 등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승인된 SEEMP PART III 및 CoC - 지난 3년간 SoC

(3) 추가 검증(Additional verification, MARPOL 부속서 VI 제6.8규칙)

- 선박이 3년 연속 D등급 또는 단일연도 E등급을 받을 경우 MARPOL 부속서 VI 규칙 제28.7 및 제28.8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관청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추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개정된 SEEMP Part III는 DCS 및 CII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4월 30일 전까지는 반드시 주관청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검증 요소	제출 서류
a) 대상 선박에 시정 조치 계획 필요성 확인 b) 3년 이행 계획의 MEPC.346(78) 부록 2bis 형식 준수 여부 c) 시정 조치 계획의 조치 적용을 위해 계획된 일정 검증 d) 시정 조치 계획의 조치 또는 조치 조합에 대한 효과 평가 e) 시정 조치 계획의 조치 수행 가능성 확인	- 직전 승인된 SEEMP PART III 및 CoC - 지난 3년간 SoC - 낮은 CII 등급 원인 분석 관련 문서 - 이전 이행 계획의 조치에 대한 성과 분석 관련 문서 - 이행 계획에 추가 또는 수정된 조치 관련 문서 - 추가 조치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 요인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정 조치 관련 문서

Verification Year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Data Year	-	2023	2024	2025	2026	2027
Case 1 – CII Rating	-	E	C	C	B	C
Case 2 – CII Rating	-	C	D	E	C	C
Case 3 – CII Rating	-	D	D	D	C	C
Remarks	시정조치 계획 없는 초기 SEEMP	Case 1의 경우 : 2025년에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필요한 CII 허용값을 달성하기 위한 시정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SEEMP를 개정·검증을 위해 제출 (추가 검증 에 해당)	Case 2와 3의 경우 : 2027년에 수집되는 데이터 대상으로 CII 허용값을 달성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포함한 SEEMP 개정·검증을 위해 제출(추가 검증 에 해당)			
	2025년 말까지 개정된 SEEMP를 준비·검증을 위해 제출(정기 검증 에 해당)		2028년 말까지 개정된 SEEMP를 준비·검증을 위해 제출(정기 검증 에 해당)			

3. Company Audit 상세 안내

1) 회사 심사 개요

개발된 SEEMP는 MARPOL 부속서 VI 규칙 제26.3.3에 따라 회사는 주관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 심사는 아래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진행됩니다.

- A. 이전에 적합확인서가 발생된 SEEMP Part III가 규칙 제26.3.1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함
- B. 선박의 등급과는 관계없이 선박에 SEEMP Part III에 따라 운용되는지 확인
- C. 3개년 이행 계획과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에 진행상황을 확인
- D. 자체 평가 및 취해진 개선 조치를 확인
- E. 조치의 이행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책임 분담을 확인

정기적 회사 심사는 연차(추가) 회사심사 및 선박 심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선박 검증 및 회사 심사가 수행되는 경우, 늦어도 적합확인서 발급 이후 6개월(11월 말)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회사 심사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주관청에서 판단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선박 심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2) 회사 심사 주요 검증 요소 및 관련 사항

SEEMP Part III의 회사 심사의 목적은 회사와 선박으로부터 SEEMP Part III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MARPOL 부속서 VI 제26.3.3규칙에 따라 회사는 의무적으로 주관청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회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 심사의 주기는 3년이며, 주관청 지침에 따라 심사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검증 요소	제출 서류
1. 이전에 적합확인서가 발생된 SEEMP Part III가 규칙 제26.3.1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 SEEMP PART III 최초 수립 일자 및 개정 이력 확인 - SEEMP PART III 개발 담당자 및 선박/육상 담당자 확인 - 담당자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수료 여부 - 담당자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자원 획득 여부 -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관련 절차, 교육 수준 및 자원 가용성에 대한 친숙도 확인	- 회사내부 절차서 - 교육 기록 - 지원/자원 획득 기록

<p>2. 선박 제원 및 CII 정보 일치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된 SEEMP PART II에 명시된 선박 제원정보와 일치 여부 - 계산된 CII 허용값, CII 달성값, CII 등급 정확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G1 ~ G5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산 방법 적용 여부 b) 기준선, Transport work 계산시 적절한 선박 용량 반영 여부 * KR-GEARs에서 자동 계산된 값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확인 절차 생략 - CII 달성값 계산에 사용되는 정보를 선박의 주관청에 보고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SEEMP PART III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SEEMP PART II에 포함 여부 	<p>- SEEMP PART II 승인본</p>
<p>3. 선박의 등급과는 관계없이 3개년 이행 계획에 따라 운용되는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치가 이행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 완료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3개년 이행 계획에 따라 각 조치의 진행 여부 b) 이행 계획과 각 조치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담당자의 책임 분담 여부 c) 각 조치의 CII 영향 기여도에 대한 평가 여부 d) CII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여부 e) 3개년 이행 계획과 관련된 회사 내 관련 절차서 보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수행 관련 기록 - 평가 수행 관련 기록 - 관련 회사 내부 절차서
<p>4. 자체 평가 및 취해진 개선 조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평가 및 개선' 절차 수립 여부 - '자체 평가 및 개선' 관련된 책임 분담 포함 여부 - '자체 평가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이행 여부 - '자체 평가 및 개선' 절차의 효율성 확인 - '자체 평가 및 개선'과 관련된 회사 내 관련 절차서 보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평가 관련 기록 - 개선 관련 기록 - 관련 회사 내부 절차서
<p>5.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운용되는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연속 D등급 또는 단일 연도 E등급을 받은 선박에 한하여 적용 - 목표한 CII 등급을 도달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분석 수행 여부 - 수립한 이행 계획 미수행 원인에 대한 분석 수행 여부 - 시정 조치가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 완료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각 조치의 진행 여부 b) 각 조치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담당자의 책임 분담 여부 c) CII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여부 d) 각 조치의 CII 영향 기여도에 대한 평가 여부 e) 시정조치 계획과 관련된 회사 내 관련 절차서 보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평가 관련 기록 - 개선 관련 기록 - 관련 회사 내부 절차서

3) 회사 심사 진행 절차

(1) 심사 신청

회사 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KR GEARs를 이용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만약 ISM 심사와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DOC 심사신청서와 DOC 심사 시 필요서류를 관할지부에 송부 하거나 KR e-fleet에 이를 첨부하여 심사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선박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KR GEARs에서 선박 정보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2) 심사 계획

심사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 계획서를 회사에 송부합니다.

- A. 심사 일반 : 심사일, 장소
- B. 심사 인원 : 담당 심사원 성명 및 연락처
- C. 심사 대상 : 기국
- D. 피심사자 : 심사 담당부서와 담당자 및 면담시간 식별
- E. 심사 필요시 구비 필요 문서 리스트

(3) 심사 진행

- 담당자 인터뷰와 문서 심사를 통해 회사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SEEMP Part III에 대한 이해도
 - B. SEEMP Part III 이행을 위한 충분한 지원 여부
 - C. SEEMP Part III 내 3개년 이행 계획 이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보장 여부
 - D. SEEMP Part III 내 3개년 이행 계획 이행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지원 여부
 - E. (시정 조치 계획이 있는 경우) SEEMP Part III 내 시정 조치 이행을 위한 지원 여부
 - F. (시정 조치 계획이 있는 경우) SEEMP Part III 내 시정 조치 이행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보장 여부
 - G. (시정 조치 계획이 있는 경우) SEEMP Part III 내 시정 조치 이행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지원 여부

(4) 심사 완료

SOF(Statement of Fact) 및 심사보고서(SEEMP Company Audit Report) 발행

4) 기국별 추가 요구사항

[원칙적으로 회사 심사는 주기는 3년이므로 '25.12.31까지 수행되어야 합니다. 라이베리아 및 포르투갈 기국 선박의 경우 아래의 추가 요구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라이베리아(Marine Advisory: 36/2024)

- [한 척 이상의 선박이 E 등급을 받았거나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회사심사가 수행되어야 함](#)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회사심사가 수행되어야 함](#)
- [2년 연속 E 등급을 받은 선박은 선박심사가 수행되어야 함](#)
- [주관청은 회사심사 기한을 '25년 5월 31일까지 연장함\(기한이 이내인 경우\)](#)

(2) 포르투갈(Flag Instruction No. 02/2025)

- 등급과 상관없이 회사심사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수행되어야 함
-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회사심사가 수행되어야 함
- E 등급을 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선박심사와 함께 회사심사가 수행되어야 함
- 주관청은 회사심사 기한을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기한이 이내인 경우)

동 기술정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업무팀(convention@krs.co.kr) : 협약 관련 일반 문의
- 친환경기술팀(krgst@krs.co.kr) : SEEMP Part III 검증 관련 문의
- 협약심사팀(conaudit@krs.co.kr) : 심사 관련 일반 문의. 끝.

배부처 : 검사원, 선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

(Distributions : KR surveyors, Ship owners, Other relevant parties)

Disclaimer :

While every possible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technical information, the Korean Register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any errors or omissions contained herein, nor shall it be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technical information.